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 람	기관의 장

제568호

2007년 3월 5일 월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0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08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변경공고 8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문화공보과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1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05년 12월 30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자”를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감량의무사업장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지정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로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서구청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 전 화 번 호 : (032) 560-4415
 - fax : (032) 560-4399

4.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구 고시로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지역에서는 감량의무사업
장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을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
게음식점과” 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시행 규칙 제9조의2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과 서 구 고시로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 거지역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을 포함한 모 든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 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 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 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 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이상인</u> <u>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u> <u>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u> <u>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u> <u>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제조·판매하</u> <u>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과</u> ----- -----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0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용역명 :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및 등기 용역

2. 용역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서구 경서동 173번지 일원
- 규 모 : A=343,482.4m²
- 용 역 비 : ₩392,799,000(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과업내용 : 환지처분 및 등기

4. 입찰예정시기 : 2007년 3월

※ 발주청 사정에 의해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는 개별통지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에 대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 국가(산하 정부투자기관포함), 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업 포함) 발주사업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면적 100,000 m²(1건) 이상의 환지계획(환지처분)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라.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회사를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8호)에 의거 인천광역시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

6.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 홈페이지(<http://seo.incheon.kr>)에 게재

- 게시기간 : 2007. 2. 28 ~ 2007. 3. 9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07년 3월 15일(목요일, 09:00~18:00)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4층)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우편접수 불가)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선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5의 1호 및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2005-258호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함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일정점수(90점)이상을 득점한 용역업체로서 90점이상 용역업체가 5개사 이상일 경우 상위 5개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제공고 한다.

8. 기타사항

- 가.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업체 참가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해당전문분야 자격현황, 업체 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적증명원)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는 공동도급협정서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공동도급업체 모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도시개발과(032-560-4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ummary Notice

1. Subject matter of contract

○ Project Title :

A project for the disposal of replotting & the registration of land readjustment project of Kyeong-seo district

○ Scope : 343,482.4m²

○ Estimated Price : 392,799,000Won(VAT included)

○ Project period : for 180 days from the start-up

○ Object :

A region of Kyeong-seo, Seo-Gu, Incheon metropolitan-City, Korea

2. Deadline for submission and registration

○ Time limit for submission and registration of the required documents :

9:00 ~ 18:00, Mar 15th, 2007

3. Submission place :

○ City Renewal Division of Seo-Gu Office, Incheon Metropolitan-City

4.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 call 032-560-478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08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변경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주민의 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연서 주민 수) 규정에 의하여 19세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청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의 주민수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단위: 명)

구분	19세이상 의 주민수 ①	19세이상의 주민중 선거권이 없는자 ②	19세이상의 주민총수 ① - ②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당초	277,071	969	276,102	5,522 (1/50)
변경	277,071	969	276,102	6,902 (1/40)